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0-41호

행정7급(노무)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
최종합격자 명단 및 서류제출 안내

경인지방우정청 행정7급(노무)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공고합니다.

2020년 3월 4일
경인지방우정청장

1. 최종합격자

채용직급	근무기관	최종합격자 응시번호
행정주사보(7급)	경인지방우정청	경인004

2. 임용시기 : 별도 통보

3. 최종합격자 서류 제출 안내

○ **제출기한** : 2020. 3. 11.(수)

- 제출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('20. 3. 11. 소인까지 유효, 퀵서비스 불가)

○ **제출장소** : 경인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**행정7급(노무)채용담당** ☎ 031-8014-3241

※주소 : ㉾(16626)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-55(탑동)

임용 시 제출하여야 할 임용관계서류

① 신원진술서 2부 : 붙임참조

※ 동일한 사진(3㎝ × 4㎝) **2매 부착**

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부 : 붙임참조

③ 기본증명서(상세) 2통

※ 주민등록번호가 뒷번호까지 모두 기재된 것

④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통

※ 주민등록번호가 뒷번호까지 모두 기재된 것

⑤ 주민등록초본 1통(군 병적사항 기재된 것) → 호봉산정시 참고

※ 주민등록번호가 뒷번호까지 모두 기재, 주소이력 전체 기재된 것

⑥ 최종학교졸업(재학·휴학·재적)증명서 1통

※ 졸업증서 사본이나 검정고시합격증 사본도 가능함

⑦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1부 : 붙임참조

※ 2019.12.24.이전 양식 사용불가,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까지 모두 기재

⑧ 통장사본 1부

⑨ 경력증명서 1통(해당할 경우)

⑩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(해당할 경우)

4. 행정사항

○ 합격자의 임용 시기는 **인력 상황에 따라 바로 임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** 임용시기·절차 등은 인사담당자가 별도 통보 예정

○ 공무원 임용을 위해서는 신원조회 결과 임용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,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, 기타 채용하기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

○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안내를 받지 못함으로써 임용 등에 차질이 생겨 합격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전화, SMS, 개인메일 등 상시 연락망을 유지하여야 함

○ 채용시험에서 인정되는 근무경력과 호봉 책정 시 인정되는 '유사경력'은 인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, 경력요건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 책정 시 해당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
○ 기타 임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담당(031-8014-3241, 3244)로 문의

[별지 제20호서식] <개정 2017.2.22.>

신 원 진 술 서

※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☑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성 명		한 자		주민등록번호		[사 진] 사진파일 가능 (3cm×4cm)· (3.5cm×4.5cm)
등록기준지						
주 소						
실거주지						
직 장	직장명 : 소재지 :			연락처	직장전화 : 휴 대 폰 : E-mail :	
국 적	□ 대한민국	□ 복수국적 국가명:	□ 외국국적 국가명:	배우자 및 자녀 국적		
특 기		취 미		자격증		

재 산	본인 및 배우자	부동산 : 만원,	동산 : 만원,	채무 : 만원
	미혼 자녀	부동산 : 만원,	동산 : 만원,	채무 : 만원

정당·사회 단체 활동	□ 있음	단 체 명	기 간	직 책
			. . ~ . .	
	□ 없음		. . ~ . .	

병 역	본 인	군 별	병 과	최종 계급	기 간	미필 사유
					. . ~ . .	
	자 (성명)				. . ~ . .	
	자 (성명)				. . ~ . .	

학 력	학 교 명	기 간	전공 학과	학 위	소 재 지
	초등학교	. . ~ . .			
	중학교	. . ~ . .			
	고등학교	. . ~ . .			
	대학교	. . ~ . .			

210mm×297mm 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

(뒤쪽)

경 력	기관 또는 업체명		기 간	직 책(직급)	상벌 관계(일자)
			. . ~ . .		
			. . ~ . .		
			. . ~ . .		
해외 거주 사실	거주 국가		기 간	거주 목적	동반 가족
			. . ~ . .		
			. . ~ . .		
가족 관계	관 계	성 명	생년월일	직 업·직 책	거 주 지
부모 배우자 자녀					
배우자 부모					
북한 거주 가족					

친교 인물	관 계	성 명	직 업·직 책	연 락 처

1.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, 기재사항 누락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「국가공무원법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.

2.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작 성 자 성명 인(서명 또는 날인)

210mm×297mm 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

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
■ 본인은 공직임용에 있어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(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. 이하 동일)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,
이를 위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.

■ 이에 따라,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.

■ 본인(가족 포함)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.

유의사항 (개인정보 수집 목적·관리방법,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)
■ 수집된 개인정보자료·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, 「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」에 따라 관리·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. ■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년 월 일

성명 (서명)

■ 본인 및 가족 동의 (자녀는 결혼·해외거주 등에 불문하고, 미성년은 본인대리 서명 가능)

구 분	성 명	생년월일	서 명	
			개인정보 제공 동의	민감정보 제공 동의
본인			자필서명	자필 서명
배우자			자필서명	해당없음
자녀			자필서명	해당없음
자녀			자필서명	해당없음
자녀			자필서명	해당없음

※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(밑줄은 민감정보)

본 인(예시)	가 족(예시)
■ 주민등록·가족관계등록부, 공무원인사기록(행자부·인사처) ■ 주민·범죄경력·수사·수배 조회자료(경찰청) ■ 출입국자료(법무부) ■ 토지·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(국토부) ■ 소득 및 개인·법인 사업자 자료(국세청) ■ 병적자료(병무청·기무사) ■ 금융기관 대출자료(한국신용정보원)	■ 주민등록·가족관계등록부(행자부) ■ 출입국자료(법무부) ■ 토지·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(국토부) ■ 소득 및 개인·법인 사업자 자료(국세청) ■ 병적자료(병무청·기무사) ■ 금융기관 대출자료(한국신용정보원)

( ) 우체국장 귀하

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[별지 제1호서식]<2019.12.24.개정>

(앞쪽)

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구 분	② 시험실시기관	③ 응시직명	④ 응시번호	⑤ 성 명		사 진 (3.5㎝ × 4.5㎝) ※ 압인 또는 계인
⑥ 검사 시						
⑦ 재사용				⑧ 주민등록번호		

검 사 내 용

키		cm	체 중		kg
허리둘레		cm	혈 압		
(교정)시력	좌: ( ) 우: ( )	색 신 (색 각)		(교정)청력	좌: ( ) 우: ( )
종 양 질 환			이비인후질환		
호 흡 기 질 환			심 혈 관 질 환		
소 화 기 질 환 (간 질 환 포함)			신장/비뇨기계질환		
내 분 비 질 환			혈 액 질 환		
신 경 질 환			피 부 질 환		
근골격계 질환			안 질 환		
정 신 질 환			흉부X선 검사		
기 타					

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.

년 월 일

검사자(담당의사) (서명 또는 인)

검사 결과 합격 여부	[ ]합 격 [ ]판 정 보 류	합격 사유	
판정보류 사유 (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)	*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		

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검진기관의 장 (서명 또는 인)

유효기간	판정일부터 1년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

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[응시자]

1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   가.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.
   (예: 인사혁신처, 국세청 등)
   나.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.
   (예: 9급 세무직, 7급 전기직 등)
   다.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.

2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
   ※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[검진기관]

1.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(押印) 또는 계인(契印)을 해야 합니다.
2. "검사 내용" 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.
   가. 검사 결과 기재의 예: 질병명(심부전증, 백혈병, 척수종양 등)을 적거나 "정상", "양호", "이상 없음" 등으로 적어야 함

   ※ 필수사항: 질병이 있는 경우 "합격" 또는 "불합격"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

   ※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   나.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.
   - (작성 예시) 임산부인 경우 "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" 라고 적습니다.

3. "검사 결과 합격 여부" 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[]안에 "√"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.

   ※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.

   가. 합격 사유 기재의 예
   - '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' 에 해당하지 않음
   -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(예시: '만성골수성백혈병' 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(官解)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)

   나.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
   -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(예시: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사지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)

   ※ 응시자의 질환이 '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' 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

4.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야 합니다.

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[별지 제2호서식]

전문의 소견서

※ 하단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시험실시기관		③ 성 명		사 진 (3.5㎝ × 4.5㎝) ※ 압인 또는 계인
② 응시직명		④ 주민등록번호	-	

응시자의 질환명	
응시자의 질환과 업무수행 지장 여부에 대한 의견	※ 필요한 경우 양식을 변경하거나, 다른 소견서 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응시자의 질환과 업무수행 지장 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_____전문의 (서명 또는 인)

※ 소속 병원명 : (☏)

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[응시자]

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
- ①란에는 시험실시기관(예: 인사혁신처, 국세청 등), ②란에는 응시한 직명(예: 9급 세무직, 7급 전기직 등)을 적어야 합니다.

[전문의]

1.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(押印) 또는 계인(契印)을 해야 합니다.
2. 위 소견서는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.
   - 응시자의 질환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작성합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

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[별지 제3호서식]

(앞쪽)

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구 분	② 시험실시 기관	③ 응시 직명	④ 응시 번호	⑤ 성 명		사 진 (3.5㎝ × 4.5㎝) ※ 압인 또는 계인
⑥ 검사 시						
⑦ 재사용				⑧ 주민등록번호	-	

신체검사 판정보류 질환에 대한 전문의 검사결과 (재신체검사 결과 등)	

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 원인이 된 질환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.

년 월 일

검사자(분야 전문의) (서명 또는 인)

신체검사 판정결과	[ ]합 격 [ ]불 합 격 [ ]판 정 보 류	합격 사유	
불합격 또는 판정보류 사유	*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		

신체검사 판정보류 질환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결과를 근거로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검진기관의 장 (서명 또는 인)

유효기간	판정일부터 1년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

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[응시자]

1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   가.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.
   (작성: 경인지방우정청)
   나.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.
   (작성: 우정9급 계리직)
   다.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.
2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3.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질환이 복수인 경우, 같은 분야의 질환을 제외하고는 각각의 질환에 대해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
[검진기관]

1.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(押印) 또는 계인(契印)을 해야 합니다.
2. "신체검사 판정보류 질환에 대한 전문의 검사결과" 란에는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질환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의의 추가적인 검사 결과를 적습니다.
   - (작성 예시) 신체검사에서 재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0000 질환에 대하여 0000 한 이유로 00000 라고 판단함
3. "신체검사 판정결과" 란에는 신체검사서(별지 제1호서식)에 기재된 판정보류 사유와 이에 대한 전문의 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합격, 불합격, 판정보류 여부를 적습니다.
   가. 합격 사유('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' 에 해당하지 않음) 기재의 예
   - 에디슨병(만성부신피질기능부전)이 있으나 호르몬 치료 등을 병행하는 경우 공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
   -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.2 이하이지만 글씨를 충분히 확대할 경우 업무처리가 가능한 경우
   -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 치료를 받으면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   나.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
   - 치료 시 증세가 호전될 수는 있지만, 당장 치료와 업무를 병행할 수 없어 합격 판정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, 치료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치료를 위해 판정보류를 유지

   ※ 재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를 받은 경우, 해당 재신체검사만 다시 받으면 됩니다.

   다. 불합격 사유 기재의 예
   - 해당 질환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더라도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야 합니다.